

우리나라 보육실습의 현황분석:
보육실습 기관 및 지도교사, 보육실습생, 보육실습 지도비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Current Condition of Student Childcare Training in Korea:
Student Childcare Training Centers, Guidance Teachers,
Student Teachers and Student Childcare Training Fees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국 장 김 의 향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연구실
실 장 서 문 희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성 미 영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팀 장 민 미 희

Department of Childcare Human Resource Development,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Director : Eui Hyang Kim

Office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 Director-General : Moon-hee Suh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kyeo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Miyoung Sung

Department of Childcare Human Resource Development,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Manager : Mi Hee Mi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조사결과 및 해석 | |

Corresponding Author : Miyoung Sung,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kyeong University, 16-1 Jungneung-dong, Sungbuk-gu, Seoul, 136-704,
Korea Tel: +82-2-940-7554 Fax: +82-2-940-7554 E-mail: minie@skuniv.ac.kr

* 본 연구는 육아정책개발센터 보육자격관리사무국(현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2009년도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수행된 실태조사 결과의 일부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condition of student childcare training in Korea. Participants were 221 university professors, 467 childcare center directors, and 1,260 guidance teachers in Korea.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the current condition of student childcare training centers, guidance teachers, student teachers, and student childcare training fees. The results showed 64.4% of these centers charged a student childcare training fee, and 35.6% of them did not charge a fee. The average student childcare training fee was 41,000 won. This study aims to offer a realistic understanding and effective information on student childcare training in Korea and to suggest practical standards for student childcare training.

주제어(Key Words) : 보육실습 기관(student childcare training center), 보육실습 지도교사(guidance teacher), 보육실습생(student teacher), 보육실습 지도비(student childcare training fee)

I. 서론

보육실습은 국가가 발급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인 뿐 아니라,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형성하고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또한,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연습하는 사전 준비과정이며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현장에서 실제 적용해 보는 과정으로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과정이다(이소희, 2005).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실습이 교과목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을 뿐 보육실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다. 1996년 1월 6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보육실습을 강화하기 위해 4주간의 보육실습을 필수로 채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 2003). 이후 2005년 1월 3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학(교)의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이 전면 개정되면서 보육기초 영역과 더불어 보육실습 영역을 필수 이수 교과목으로 규정하였고 보육실습의 기준도 「보육실습 세부기준」으로 구체화되었다(여성가족부, 2007; 여성부, 2005). 예를 들어, 보육실습 교과목 기준의 경우 종전규정에서는 보육실습 교과목명으로 이수하지 않더라도 보육실습확인서를 통해 내용상 보육실습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보육실습 이수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현행규정에서는 보육실습 교과목명이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교과목명으로 정해지면서 반드시 동일 교과목명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외 교과목명으로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보육실습 기관 기준의 경우 종전규정에서는 보육시설, 종일제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었으나, 현행규정에서는 반드시 보육정원 15인 이상의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청에 등록된 종일제 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해야 인정된다. 보육실습 지도교사 기준의 경우 종전

규정에서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자가 보육실습을 지도해야 인정되었으나, 현행규정에서는 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소지자가 보육실습을 지도해야 인정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이처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인해 보육실습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으나,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실습 기관 및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질 관리, 보육실습 내용의 표준화 등 보육실습 제도 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육실습 지도비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육실습 지도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의 신설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보육실습에 임하는 보육실습생 본인은 물론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 보육시설 모두 보육실습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보육실습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실체는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다. 개인편의 위주로 보육실습에 임하거나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보육시설 역시 진지한 교육의 장으로서 보육실습을 이끌지 못하는 등의 일부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보육실습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과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보육실습 기관별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보육실습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육실습 내용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전국적인 보육실습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보육실습 지도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육실습 관련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실습을 지도하고 있는 담당교수, 보육실습생을 지도하는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원장, 그리고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실습에 관한 내용 중 보육실습 기관 및 지도교사, 보육실습생, 보육실습 지도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보육실습의 실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김지영, 2000; 박

지완, 2001; 임효진, 2007; 조희진, 김정신, 노은호, 2003)은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일부 수행된 보육실습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특정지역의 실태조사에 그치거나 조사내용도 부분적이었다. 또한, 보육실습생을 보육실습 기관에 보내는 대학(교)이나 보육교사교육원, 보육실습생을 실제적으로 지도하는 보육실습 기관의 원장이나 교사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보육실습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까지 실시된 보육실습 관련 실태조사 중 보육실습 기관 선정의 경우,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실습생을 보낼 보육실습 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기준 없이 보육실습생의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김지영, 2000; 박지완, 2001; 조희진 외, 2003)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육실습생들은 보육실습 기관에 보육실습 지도비 또는 별도의 금액을 납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4년제 대학교의 경우 대체적으로 평균 4만원의 보육실습 지도비를 납부하고 있었고, 보육실습생이 보육실습 기간 동안

안 교재교구 제작 시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평균 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실습 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 보육교사 국가자격 불인정 사례(2005.4.25~2009.5.31 기준) 949건 중 보육실습 관련하여 불인정을 받은 사례가 492건(45.2%)으로 나타났다(보육자격관리사무국, 2009). 구체적으로, 보육실습 교과목 미이수, 보육실습 기관의 정원 미달,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자격 미달 등이 주요 사유였다. 이와 같은 보육실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문적인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 보육시설에서 보육실습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보육실습 지도지침 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보육자격관리사무국(현,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아이사랑플랜 6대 추진 과제 중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사업」의 단위사업인 표준보육실습 지도지침 개발에 앞서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 교수	소재지	전체	100.0(220)
		서울·인천·경기도	31.4(69)
	기관유형	강원도·충청남북도·대전	14.4(31)
		경상남북도·부산·울산·대구·	31.8(70)
		전라남북도·광주·제주도	22.7(50)
기관유형	전체	100.0(217)	
	2년제 대학	30.9(67)	
	3년제 대학	20.7(45)	
	4년제 대학교	30.4(66)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원장	소재지	전체	100.0(466)
		서울·인천·경기도	18.7(87)
	시설유형	강원도·충청남북도·대전	13.9(65)
		경상남북도·부산·울산·대구·	57.3(267)
		전라남북도·광주·제주도	10.1(47)
시설유형	전체	100.0(464)	
	국공립보육시설	13.4(62)	
	법인보육시설	7.8(36)	
	민간보육시설	42.7(198)	
	가정보육시설	21.1(98)	
	국공립종일제유치원, 사립종일제유치원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11.9(55) 3.2(15)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교사	소재지	전체	100.0(1,256)
		서울·인천·경기도	31.1(391)
	시설유형	강원도·충청남북도·대전	20.1(253)
		경상남북도·부산·울산·대구·	35.4(445)
		전라남북도·광주·제주도	13.3(167)
시설유형	전체	100.0(1,255)	
	국공립보육시설	20.6(259)	
	법인보육시설	21.5(270)	
	민간보육시설	38.4(482)	
	가정보육시설	10.5(132)	
	국공립종일제유치원, 사립종일제유치원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5.2(65) 3.7(47)	

주. 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보육실습의 현황을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우리나라 보육실습 기관 및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현황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우리나라 보육실습생의 현황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우리나라 보육실습 지도비의 현황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이 연구에서는 2009년 보육자격관리사무국(현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실시한 전국 보육실습 실태조사에 참여한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 교수 221명, 보육시설장 및 종일제 유치원 원장 467명, 보육교사 및 종일제 유치원 교사 1,26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조사내용

보육실습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보육실습 관련 선행연구(김지영, 2000; 박지완, 2001; 조희진 외, 2003)를 기초로 하여 보육자격관리사무국(현,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개발하였으며 보육실습 관련 전문가 검토와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 교수용,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원장용,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교사용 총 3종으로 구성되었다.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 교수용 설문지는 보육실습 이수기준 인식, 보육실습 교과목 및 실시 시기, 보육실습 지도방법 및 교육내용, 보육실습 순회지도 및 평가, 보육실습 지도비, 보육실습 관련 인식, 표준보육실습 지도지침 개발에 대한 요구도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원장용 설문지는 보육실습 이수기준 인식, 보육실습 지도비, 보육실습생, 보육실습 지도교사, 보육실습 담당교수 순회지도, 보육실습 지도방법 및 교육내용, 표준보육실습 지도지침 개발에 대한 요구도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교사용 설문지는 보육실습 이수기준 인식, 보육실습 지도수당, 보육실습생, 보육실습 담당교수 순회지도, 보육실습생 피드백 제공 및 평가, 보육실습 운영, 표준보육실습 지도지침 개발에 대한 요구도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설문지 내용 중 본 연구에서는 보육실습 기관, 보육실습 지도교사, 보육실습생, 보육실습 지도비에 관한 문항을 중심으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보육실습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 교수용 설문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원장용, 교사용 설문지를 보육자격관리사무국(현,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각 기관으로 우편발송하거나,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7월~8월 사이 약 6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응답된 설문지는 우편, 이메일, 팩스로 회수하였다. 먼저 보육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한 대학(교)의 해당 학과에 보육실습 지도경험이 있는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지 986부를 배부하였고, 전국 보육교사교육원에 보육실습 지도경험이 있는 교수를 대상으로 123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회수된 221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2008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중 보육실습 지도 경험이 있는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에게 각각 2,171부, 4,266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588명의 보육시설장과 1,688명의 보육교사가 응답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보육시설장 393명, 보육교사 1,179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총 7,336개소 유치원 중 10%를 추출한 718개소의 유치원으로 원장용 및 교사용 설문지를 각 718부를 배포하였으며 종일제 유치원에 한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78명의 원장과 83명의 교사가 응답한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종일제 유치원 원장 74명, 교사 81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해 통계처리되었으며, 빈도, 백분율, 카이스퀘어 검증(χ^2)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III. 조사결과 및 해석

1. 보육실습 기관 및 지도교사 관련 실태분석

1) 보육실습 기관 선정기준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의 보육실습 기관 선정기준을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는 보육실습생 본인의 희망(39.0%), 2순위와 4순위에서는 보육실습 이후 보육실습생의 취업가능 여부(23.4%, 22.5%), 3순위에서는 보육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우수성(20.9%)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내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보육실습생 본인의 희망(39.0%)과 더불어 보육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우수성(34.9%)도 시설 선정기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2〉 보육실습 기관 선정기준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보육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우수성	34.9	21.1	20.9	13.1	5.2	6.2
보육시설의 규모	5.0	18.3	20.0	20.2	25.2	12.9
보육시설과 교수의 개인적 유대관계	0.9	5.5	9.8	11.7	20.5	51.0
보육시설 설립유형	15.6	17.0	17.7	18.8	18.6	12.9
보육실습 이후 취업가능 여부	4.6	23.4	16.7	22.5	20.5	11.0
보육실습생 본인의 희망	39.0	14.7	14.9	13.6	10.0	6.2
전체	100.0 (218)	100.0 (218)	100.0 (215)	100.0 (213)	100.0 (210)	100.0 (210)

〈표 3〉 보육실습 기관 유형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부모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계
기관유형									
2년제 대학	22.0	22.4	24.4	5.6	14.4	1.6	2.4	7.2	100.0(250)
3년제 대학	21.8	23.5	22.9	8.2	5.9	0.6	4.7	12.4	100.0(170)
4년제 대학교	26.8	20.0	20.0	11.4	6.8	0.9	7.3	6.8	100.0(220)
보육교사교육원	19.6	19.0	24.1	7.6	18.4	3.2	3.2	5.1	100.0(158)
보육실습생 인원									
50명 이하	28.7	24.0	21.0	9.6	6.0	0.6	6.0	4.2	100.0(167)
51-100명 이하	23.4	22.9	24.0	8.9	9.9	0.5	3.1	7.3	100.0(192)
101-200명 이하	21.6	20.3	23.7	7.2	13.1	2.5	3.8	7.6	100.0(236)
201명 이상	18.2	17.2	22.2	7.1	16.2	4.0	6.1	9.1	100.0(99)
전체	22.9	21.3	22.7	8.4	11.2	1.5	4.4	7.7	100.0(814)

주. 중복응답 문항임.

〈표 4〉 보육실습 지도교사 선정기준

단위: %(명)

구분	시설에서의 직급에 따라 배정	시설에서 근무경력이 많은 교사	보육실습 지도경험이 있는 교사	보조교사/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학급	기타	계	$\chi^2(df)$
시설유형							
국공립	24.6	36.1	14.8	13.1	11.5	100.0(61)	n.a.
법인	42.9	28.6	17.1	5.7	5.7	100.0(35)	
민간	38.8	27.6	18.9	9.7	5.1	100.0(196)	
가정	27.6	35.7	17.3	12.2	7.1	100.0(98)	
직장·부모	21.4	42.9	7.1	21.4	7.1	100.0(14)	
유치원	17.0	49.1	17.0	13.2	3.8	100.0(53)	
시설규모							
20명 이하	26.5	36.8	18.8	11.1	6.8	100.0(117)	25,260(12)*
21-50명 이하	46.4	26.1	15.0	7.2	5.2	100.0(153)	
51-100명 이하	22.3	35.0	21.4	15.5	5.8	100.0(103)	
101명 이상	26.3	38.8	15.0	11.3	8.8	100.0(80)	
전체	32.0	33.3	17.4	11.1	6.3	100.0(460)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정하지 않음을 의미함.

* $p < .05$.

2) 보육실습 기관 유형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의 2008학년도 보육실습 기관 유형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보육시설(22.9%), 민간보육시설(22.7%), 법인보육시설(21.3%)의 응답이 높았으며, 가정보육시설(11.2%), 직장보육시설(8.4%), 사립 중일제유치원(7.7%), 국공립 중일제유치원(4.4%), 부모협동보육시설(1.5%)의 순으로 나타나서 국공립, 민간, 법인보육시설을 위

주로 보육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의 개별특성 중 먼저 기관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보육교사교육원과 2년제 대학의 경우 민간보육시설에 보육실습을 보낸다는 응답이 24.4%와 24.1%로 가장 높았으며, 4년제 대학교는 국공립보육시설(26.8%), 3년제 대학은 법인보육시설(23.5%)에 보육실습을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실습생 인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50명 이하의

〈표 5〉 보육실습생 인원

단위: 명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범위
최근 1~2년 동안 보육실습생 인원	191	130.50(180.05)	1~1,745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 교수	457	2.97(2.77)	0~20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원장	1,130	1.85(2.17)	0~30
보육교사 및 종일제 유치원 교사			

기관에서는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시설의 순으로 보육실습을 보내고 있었고, 보육실습생 인원이 51명 보다 많은 기관은 민간, 국공립, 법인보육시설의 순으로 보육실습을 보내고 있었다. 또한, 보육실습생 인원이 많을수록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실습 의존율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보육교사교육원 및 보육실습생 인원이 201명 이상의 학과의 경우 다른 기관에 비해 가정보육시설에 보육실습을 보내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보육실습 지도교사 선정기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보육실습 지도교사 선정기준을 조사한 결과, 시설에서 근무경력이 많은 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에서의 직급에 따라 배정한다는 응답이 32.0%로 많았다. 보육실습 지도경험이 있는 교사, 보조교사나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학급이 17.4%, 11.1%였다. 시설유형의 경우 법인 및 민간보육시설은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시설에서의 직급에 따라 보육실습 지도교사를 배정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시설규모의 경우 21~50명 이하 시설은 다른 규모의 시설에 비해 시설에서의 직급에 따라 보육실습 지도교사를 배정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보육실습생을 희망하는 학급에 배정한다는 응답과 영아반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2. 보육실습생 관련 실태분석

1) 보육실습생 인원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 교수를 대상으로 보육실습생 인원을 조사한 결과, 최근 1~2년 동안 보육실습생 인원은 평균 130.50명이었고, 한 명의 보육실습생에서 최대 1,745명의 보육실습생을 보낸 기관까지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의 재

학생 규모에 따라 1~2년 동안 보낸 보육실습생 인원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보육실습생 인원을 조사한 결과, 최근 1~2년 동안 보육실습생 인원은 평균 2.97명이었고, 한 명의 보육실습생도 받지 않은 시설에서 최대 20명의 보육실습생을 받은 시설까지 1~2년 동안 받은 보육실습생 인원은 보육시설별로 차이를 보였다.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실습생 인원을 조사한 결과, 최근 1~2년 동안 보육실습생 인원은 평균 1.85명이었고, 한 명의 보육실습생도 받지 않은 시설에서 최대 30명의 보육실습생을 받은 지도교사까지 1~2년 동안 받은 보육실습생 인원은 보육실습 지도교사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2) 보육실습생 선정기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보육실습생 선정기준을 조사한 결과, 1순위의 경우 보육실습생의 소속기관이 42.2%로 가장 높았고, 2순위의 경우 보육실습생의 전공이 39.4%로 가장 높았으며, 3순위의 경우 보육실습생의 거주지역이 38.8%로 가장 높았고, 마지막 4순위의 경우는 보육실습생의 연령이 56.4%로 가장 높았다. 1순위 내에서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도 순위 간 결과와 동일하게 보육실습생의 소속기관(42.2%), 보육실습생의 전공(39.2%), 보육실습생의 거주지역(15.8%), 보육실습생의 연령(2.8%)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보육실습생의 전공보다 보육실습생의 소속기관이 보육교사교육원인지 아니면 2년, 3년제 대학인지 4년제 대학교인지가 보육실습생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더 우선시됨을 알 수 있다.

3) 보육실습생 선정방법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보육실습생 선정방법을 조사한 결과, 보육실습생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52.9%, 기관에서 의뢰받은 경우는 42.8%였다. 시설유형

〈표 6〉 보육실습생 선정기준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보육실습생의 소속기관	42.2	26.5	17.4	15.3
보육실습생의 전공	39.2	39.4	15.5	5.9
보육실습생의 연령	2.8	12.3	28.2	56.4
보육실습생의 거주지역	15.8	21.8	38.8	22.4
전체	100.0(436)	100.0(431)	100.0(425)	100.0(424)

〈표 7〉 보육실습생 선정방법

단위: %(명)

구분	기관 의뢰	실습생 신청	시설 자체 모집	기타	계
시설유형					
국공립	63.5	35.3	0.0	1.2	100.0(85)
법인	54.5	40.9	2.3	2.3	100.0(44)
민간	38.2	56.9	4.1	0.8	100.0(246)
가정	26.1	68.1	0.8	5.0	100.0(119)
직장·부모	63.2	31.6	5.3	0.0	100.0(19)
유치원	49.3	48.0	2.7	0.0	100.0(75)
시설규모					
20명 이하	29.4	65.0	1.4	4.2	100.0(143)
21-50명 이하	41.8	54.1	3.6	0.5	100.0(194)
51-100명 이하	45.0	50.4	3.1	1.5	100.0(131)
101명 이상	58.6	37.9	2.6	0.9	100.0(116)
전체	42.8	52.9	2.7	1.7	100.0(594)

주. 중복응답 문항임.

〈표 8〉 보육실습생 역할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 교수	관찰자 역할	52.1	27.9	18.3	1.8
	보조교사 역할	20.5	42.9	31.5	5.0
	교수자 역할	26.7	27.9	40.6	4.6
	행정업무 수행의 역할	0.5	1.4	9.6	88.6
	전체	100.0(219)	100.0(219)	100.0(219)	100.0(219)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원장	관찰자 역할	51.0	31.0	16.2	2.2
	보조교사 역할	33.0	43.1	21.3	2.4
	교수자 역할	16.0	24.5	56.6	3.1
	행정업무 수행의 역할	0.0	1.5	5.9	92.3
	전체	100.0(463)	100.0(462)	100.0(456)	100.0(455)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교사	관찰자 역할	58.7	29.1	10.4	2.0
	보조교사 역할	26.1	41.4	29.5	3.2
	교수자 역할	14.2	28.4	51.7	5.4
	행정업무 수행의 역할	1.0	1.1	8.5	89.4
	전체	100.0(1,241)	100.0(1,239)	100.0(1,235)	100.0(1,235)

에 따른 보육실습생 선정방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의뢰받기보다 보육실습생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56.9%, 68.1%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보육실습생 본인이 신청하기보다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의뢰받는 비율이 더 높았다. 시설규모에 따른 보육실습생 선정방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의뢰받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보육실습생 본인이 신청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보육실습생 역할에 대한 인식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의 보육실습 담당교사가 생각하는 보육실습생의 역할을 조사한 결과, 1순위는 관찰자(52.1%), 2순위는 보조교사(42.9%), 3순위는 교수자(40.6%), 4순위는 행정업무 수행(88.6%)의 역할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

타나서 보육실습생의 역할 중 관찰자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보육실습생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조사한 결과, 1순위는 관찰자 역할이 51.0%, 2순위는 보조교사 역할이 43.1%, 3순위는 교수자 역할이 56.6%, 4순위는 행정업무 수행의 역할이 92.3%로 나타났으며, 1순위 내에서의 역할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관찰자 역할, 보조교사 역할, 교수자 역할, 행정업무 수행의 역할 순으로 나타나 보육실습생의 역할 중 관찰자 역할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생각하고 있었다.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실습생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조사한 결과, 1순위는 관찰자 역할이 58.7%, 2순위는 보조교사 역할이 41.4%, 3순위는 교수자 역할이 51.7%, 4순위는 행정업무 수행의 역할이 89.4%로 나타났으며, 1순위 내에서의 역할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관찰자 역할, 보조교사 역할, 교수자 역할, 행정업무 수행의 역할 순으로 나타나 보육실습생의 역할 중 관찰자 역할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표 9〉 보육실습 지도비 납부 여부

구분	납부함	납부하지 않음	계	단위: %(명) $\chi^2(df)$
기관유형				
2년제 대학	92.4	7.6	100.0(66)	7.173(3)
3년제 대학	77.3	22.7	100.0(44)	
4년제 대학교	81.8	18.2	100.0(66)	
보육교사교육원	92.1	7.9	100.0(38)	
보육실습생 인원				
50명 이하	79.2	20.8	100.0(53)	5.287(3)
51-100명 이하	94.3	5.7	100.0(53)	
101-200명 이하	87.1	12.9	100.0(62)	
201명 이상	85.7	14.3	100.0(21)	
전체	85.8	14.2	100.0(218)	

〈표 10〉 보육실습 지도비 수납 여부

구분	지도비 받음	지도비 받지 않음	계	단위: %(명) $\chi^2(df)$
시설유형				
국공립	82.5	17.5	100.0(57)	21.870(5)**
법인	77.1	22.9	100.0(35)	
민간	63.1	36.9	100.0(195)	
가정	48.4	51.6	100.0(95)	
직장·부모	66.7	33.3	100.0(15)	
유치원	69.1	30.9	100.0(55)	
시설규모				
20명 이하	53.4	46.6	100.0(116)	8.996(3)*
21-50명 이하	66.2	33.8	100.0(151)	
51-100명 이하	69.3	30.7	100.0(101)	
101명 이상	71.3	28.8	100.0(80)	
전체	64.4	35.6	100.0(455)	

* $p < .05$, ** $p < .01$.

〈표 11〉 보육실습 지도수당 수령 여부

구분	받았음	받지 않았음	계	단위: %(명) $\chi^2(df)$
시설유형				
국공립	8.7	91.3	100.0(253)	27.674(5)***
법인	4.6	95.4	100.0(260)	
민간	5.0	95.0	100.0(463)	
가정	7.4	92.6	100.0(122)	
직장·부모	21.3	78.7	100.0(47)	
유치원	15.4	84.6	100.0(65)	
교사경력				
3년미만	4.3	95.7	100.0(234)	4.606(2)
3년-7년미만	5.7	94.3	100.0(545)	
7년이상	8.3	91.7	100.0(372)	
전체	7.1	92.9	100.0(1,214)	

*** $p < .001$.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수, 원장, 교사 모두 보육실습생의 관찰자 역할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3. 보육실습 지도비 관련 실태분석

1) 보육실습 지도비 납부 여부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의 보육실습생에 대한 보육

실습 지도비 납부를 조사한 결과, 85.8%가 보육실습 지도비를 보육실습 기관에 납부하고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기관유형의 경우 2년제 대학과 보육교사교육원의 보육실습 지도비 납부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실습생 인원의 경우에는 51~100명 이하의 보육실습생을 보내는 기관의 보육실습 지도비 납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보육실습생으로부터의 보육실습 지도비 수납 여부를 조사한 결과, 64.4%가 보육실습 지도비를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35.6%는 보육실습 지도비를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시설유형에 따른 보육실습 지도비 수납 여부를 살펴본 결과, 국공립보육시설은 82.5%가 보육실습 지도비를 받고 있었으며, 가정보육시설은 48.4%만이 보육실습 지도비를 받고 있었다. 시설 규모에 따른 보육실습 지도비 수납 여부를 살펴본 결과,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보육실습 지도비를 받는다는 응답의 비율도 높았다.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실습 지도수당 수령 여부를 조사한 결과, 7.1%만이 보육실습 지도수당을 수령한 반면, 92.9%가 보육실습 지도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보육실습 지도교사가 지도수당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시설유형에 따른 보육실습 지도수당 수령 여부를 살펴본 결과, 직장 및 부모협동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경우 보육실습 지도수당을 받았다는 응답이 21.3%, 15.4%로 높게 나타났으나, 교사 경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보육실습 지도비 책정 기준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의 보육실습생에 대한 보육실습 지도비 책정 기준을 조사한 결과, 53.5%가 보육실습 기관의 보육실습 지도비 금액을 참고하여 기관에서 금액을 책정한다고 응답하였고, 보육실습 기관에서 책정한 금액대로 납부한다는 응답은 29.4%였으며, 기타는 17.1%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다른 대학(교)의 기준을 참고한다, 보육실습 기관의 비용을 참고하지 않고 기관 자체의 기준으로 납부한다, 지역 연합회에서 책정한 금액대로 납부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살펴본 결과, 4년제 대학교의 경우 보

육실습 기관의 지도비 금액을 참고하여 보육실습 지도비 금액을 책정하는 비율이 49.1%로 다른 기관에 비해 낮았으며, 3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보육실습 기관에서 책정한 금액대로 납부하는 비율은 8.8%에 불과하였다. 3년제 대학과 보육교사교육원의 경우에는 보육실습 기관에서 책정한 금액대로 납부하는 비율보다 기타의 비율이 32.4%, 34.3%로 높았다.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보육실습생에 대한 보육실습 지도비 책정 기준을 조사한 결과, 84.6%가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책정한 금액대로 보육실습 지도비를 받고 있었으며, 위탁기관 또는 법인(재단)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받고 있는 경우는 8.0%였다.

보육실습 기관의 금액을 참고하여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실습 지도비 금액을 책정하는 경우 참고하는 기준을 살펴본 결과, 보육실습 지도비 금액이 시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기관에서 최소 금액으로 책정하여 수납한 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학과에서 지원한다는 응답은 34.2%였으며, 보육실습 지도비 금액이 시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보육실습 기관에서 최대 금액으로 책정하여 수납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육실습 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21.6%였다. 오히려 기타 의견이 44.1%로 높게 나타났는데, 기타 의견으로는 학과에서 일괄 금액(3~4만원)을 책정하여 납부한다, 학과에서 적정 금액을 책정하여 납부한다, 다른 보육교사교육원의 금액과 비교하여 책정한다, 보육실습생 개인별 최소 금액을 책정하여 학생이 납부한다 등이 있었다.

3) 보육실습 지도비 금액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의 보육실습생에 대한 보육실습 지도비 금액이 동일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육실습 기관에 모두 동일한 금액의 보육실습 지도비를 납부한다는

<표 12> 보육실습 지도비 책정 기준

단위: %(명)

구분	보육실습 기관의 지도비 금액을 참고하여 금액 책정	보육실습 기관에서 책정한 금액대로 납부	기타	계	$\chi^2(df)$
기관유형					
2년제 대학	56.5	37.1	6.5	100.0(62)	33.362(6)***
3년제 대학	58.8	8.8	32.4	100.0(34)	
4년제 대학교	49.1	45.3	5.7	100.0(53)	
보육교사교육원	51.4	14.3	34.3	100.0(35)	
보육실습생 인원					
50명 이하	46.3	34.1	19.5	100.0(41)	5.100(6)
51-100명 이하	62.7	19.6	17.6	100.0(51)	
101-200명 이하	52.8	28.3	18.9	100.0(53)	
201명 이상	47.4	42.1	10.5	100.0(19)	
전체	53.5	29.4	17.1	100.0(187)	

*** p < .001.

〈표 13〉 보육실습 지도비 책정 기준

단위: %(명)

구분	시설 자체 책정 금액	연합회 책정 금액	위탁기관/법인 책정 금액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 책정 금액	기타	계
시설유형						
국공립	6.1	2.0	2.0	87.8	2.0	100.0(49)
법인	3.6	3.6	10.7	82.1	0.0	100.0(28)
민간	3.2	2.4	10.5	79.8	4.0	100.0(124)
가정	0.0	2.0	6.1	87.8	4.1	100.0(49)
직장·부모	0.0	0.0	11.1	88.9	0.0	100.0(9)
유치원	0.0	0.0	7.9	92.1	0.0	100.0(38)
시설규모						
20명 이하	0.0	3.1	6.2	87.7	3.1	100.0(65)
21-50명 이하	4.9	2.0	9.8	80.4	2.9	100.0(102)
51-100명 이하	1.4	1.4	7.1	85.7	4.3	100.0(70)
101명 이상	3.4	1.7	6.9	87.9	0.0	100.0(58)
전체	2.7	2.0	8.0	84.6	2.7	100.0(299)

주.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정하지 않음.

〈표 14〉 보육실습 지도비 금액 결정 시 참고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보육실습 지도비를 최소 금액으로 책정	34.2(38)
보육실습 지도비를 최대 금액으로 책정	21.6(24)
기타	44.1(49)
전체	100.0(111)

응답이 71.9%였고, 보육실습 기관에 따라 보육실습 지도비의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은 28.1%였다.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의 개별특성 중 기관유형에 따라 살펴본 결과, 모두 동일한 금액의 보육실습 지도비를 납부한다는 응답은 보육교사교육원(85.3%), 3년제 대학(82.4%), 2년제 대학(74.2%), 4년제 대학교(5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실습생 인원에 따라서는 보육실습 지도비 납부 금액의 동일성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보육실습생 인원이 201명 이상 기관의 경우 57.9%가 모두 동일한 금액의 보육실습 지도비를 납부한다고 응답하였다.

모두 동일한 금액의 보육실습 지도비를 납부할 경우

2008학년도에 납부한 보육실습생 1인당 보육실습 지도비 금액을 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 약 4만 1천원을 납부하였고,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의 금액으로 나타났다. 보육실습 기관에 따라 보육실습생이 납부하는 보육실습 지도비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보육실습생 1인당 보육실습 지도비의 최소 금액은 약 3만 7천원이었고, 최소 금액의 범위는 0원에서 8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육실습생 1인당 보육실습 지도비의 최대 금액은 약 8만 8천원이었고, 최대 금액의 범위는 4만원에서 20만원이었다.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보육실습생 1인당 보육실습 지도비 금액을 조사한 결과, 보육실습생 1인당 보육실습 지도비의 최소 금액은 약 3만 7천원이었고, 보육실습생 1인당 보육실습 지도비의 최대 금액은 약 5만 1천원이었으며, 최소 및 최대 금액의 범위는 모두 0원에서 15만원이었다.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실습 지도수당 수령금액을 조사한 결과, 보육실습생 1인당 보육실습 지도수당의 최소 금액은 약 3만 8천원이었고, 보육실습생 1인당 보육실습 지도수당의 최대 금액은 약 5만 2천원이었으며, 최소 금액의 범

〈표 15〉 보육실습 지도비 금액 동일 여부

단위: %(명)

구분	지도비 금액 동일	지도비 금액 차이	계	$\chi^2(df)$
기관유형				
2년제 대학	74.2	25.8	100.0(62)	13.430(3)**
3년제 대학	82.4	17.6	100.0(34)	
4년제 대학교	53.8	46.2	100.0(52)	
보육교사교육원	85.3	14.7	100.0(34)	
보육실습생 인원				
50명 이하	65.9	34.1	100.0(41)	4.946(3)
51-100명 이하	78.0	22.0	100.0(50)	
101-200명 이하	79.2	20.8	100.0(53)	
201명 이상	57.9	42.1	100.0(19)	
전체	71.9	28.1	100.0(185)	

** $p < .01$.

〈표 16〉 보육실습생 1인당 보육실습 지도비(지도비 금액 동일)

단위: 명, 천원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범위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 교수	보육실습 지도비 금액(금액 동일)	41.38(14.85)	20-100
	보육실습 지도비 최소 금액	37.40(16.14)	0-80
	보육실습 지도비 최대 금액	88.13(26.22)	40-200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원장	보육실습 지도비 최소 금액	37.66(15.79)	0-150
	보육실습 지도비 최대 금액	51.07(20.54)	0-150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교사	보육실습 지도수당 최소 금액	38.20(16.91)	0-100
	보육실습 지도수당 최대 금액	52.24(29.26)	0-150

〈표 17〉 보육실습 지도비 전달방법

단위: %(명)

구분	등록금에 포함 학과에서 통장에 입금	학과에서 수령후 통장에 입금	보육 실습생 대표가 통장에 입금	보육 실습생 개인이 통장에 입금	등록금에 포함 교수가 시설 전달	학과에서 수령후 교수가 시설 전달	대표가 시설 전달	개인이 시설에 직접 전달	기 타	계
기관유형										
2년제 대학	12.9	16.1	0.0	11.3	1.6	9.7	9.7	24.2	14.5	100.0(62)
3년제 대학	11.4	20.0	0.0	0.0	8.6	25.7	5.7	17.1	11.4	100.0(35)
4년제 대학교	13.0	24.1	1.9	16.7	0.0	5.6	3.7	29.6	5.6	100.0(54)
보육교사교육원	15.6	6.3	0.0	3.1	0.0	0.0	12.5	53.1	9.4	100.0(32)
보육실습생 인원										
50명 이하	14.6	22.0	2.4	12.2	0.0	0.0	4.9	31.7	12.2	100.0(41)
51-100명 이하	8.0	18.0	0.0	4.0	4.0	10.0	12.0	30.0	14.0	100.0(50)
101-200명 이하	22.2	14.8	0.0	5.6	1.9	22.2	3.7	14.8	14.8	100.0(54)
201명 이상	10.0	10.0	0.0	10.0	0.0	0.0	15.0	55.0	0.0	100.0(20)
전체	13.4	17.2	0.5	9.1	2.2	9.7	7.5	29.0	11.3	100.0(186)

주.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정하지 않음.

〈표 18〉 보육실습 지도비 수납방법

단위: %(명)

구분	학과에서 시설통장에 입금	개인이 시설통장에 입금	대표가 시설통장에 입금	교수가 보육실습 순회지도시 시설에 직접전달	개인이 시설에 직접전달	대표가 시설에 직접전달	기 타	계
시설유형								
국공립	42.6	8.5	4.3	2.1	31.9	8.5	2.1	100.0(47)
법인	42.9	3.6	10.7	3.6	32.1	7.1	0.0	100.0(28)
민간	28.2	5.6	2.4	0.8	53.2	8.1	1.6	100.0(124)
가정	26.5	18.4	2.0	2.0	46.9	4.1	0.0	100.0(49)
직장· 부모	11.1	33.3	0.0	0.0	44.4	11.1	0.0	100.0(9)
유치원	59.5	0.0	2.7	5.4	29.7	2.7	0.0	100.0(37)
시설규모								
20명 이하	24.6	15.4	1.5	1.5	52.3	3.1	1.5	100.0(65)
21-50명 이하	29.4	9.8	2.9	1.0	49.0	7.8	0.0	100.0(102)
51-100명 이하	38.8	3.0	4.5	0.0	40.3	10.4	3.0	100.0(67)
101명 이상	53.4	3.4	5.2	5.2	27.6	5.2	0.0	100.0(58)
전체	35.5	8.1	3.4	2.0	43.2	6.8	1.0	100.0(296)

주.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정하지 않음.

위는 0원에서 10만원이었고, 최대 금액의 범위는 0원에서 15만원이었다.

4) 보육실습 지도비 전달방법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의 보육실습 지도비 전달방법

을 조사한 결과, 보육실습생 개인이 보육실습 기관에 직접 전달한다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실습생 대표가 보육실습 기관의 통장에 입금한다는 응답이 0.5%로 가장 적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학교에서 직접 보육실습 기관으로 입금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의

〈표 19〉 보육실습 지도비 사용내역

단위: %(명)

구분	시설물품 사용 비용	실습생 식비	지도교사 수당	시설운영비	기타	계
시설유형						
국공립	22.6	40.3	8.1	17.7	11.3	100.0(62)
법인	25.0	37.5	5.0	15.0	17.5	100.0(40)
민간	29.4	39.9	12.4	8.5	9.8	100.0(153)
가정	28.1	45.3	10.9	12.5	3.1	100.0(64)
직장·부모	13.3	40.0	6.7	20.0	20.0	100.0(15)
유치원	38.9	37.0	7.4	1.9	14.8	100.0(54)
시설규모						
20명 이하	28.9	41.0	12.0	15.7	2.4	100.0(83)
21-50명 이하	25.0	43.0	8.6	12.5	10.9	100.0(128)
51-100명 이하	32.6	39.1	6.5	10.9	10.9	100.0(92)
101명 이상	27.4	36.9	13.1	3.6	19.0	100.0(84)
전체	28.4	40.2	9.7	11.0	10.7	100.0(391)

개별특성 중 기관유형에 따라 살펴본 결과, 3년제 대학의 경우 학과에서 보육실습생으로부터 수령한 후 교수가 보육실습 순회지도 시 보육실습 기관에 직접 전달하는 비율이 25.7%로 다른 전달방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사교육원의 53.1%는 보육실습생 개인이 보육실습 기관에 직접 전달한다고 응답하였다. 보육실습생 인원에 따른 보육실습 지도비 전달방법의 경우 201명 이상 기관의 55.0%가 보육실습생 개인이 보육실습 기관에 직접 전달한다고 응답하였다.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보육실습 지도비 수납방법을 조사한 결과, 보육실습생 개인이 보육실습 기관에 직접 전달한다는 응답이 43.2%로 가장 높았고, 학과에서 시설의 통장에 입금한다는 응답은 35.5%였다. 다음으로 보육실습생 개인이 시설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는 8.1%, 대표가 시설에 직접 전달하는 경우는 6.8%, 대표가 시설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는 3.4%, 보육실습 순회지도 시 교수가 직접 전달하는 경우는 2.0%였다. 시설유형에 따른 수납방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개인이 시설에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53.2%, 46.9%로 높게 나타났다. 시설규모에 따른 수납방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학과에서 시설 통장에 입금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개인이 시설에 직접 전달하는 비율이 낮았다.

5) 보육실습 지도비 사용내역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보육실습 지도비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40.2%가 보육실습생의 식비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28.4%는 교재·교구 제작을 위한 시설물품 사용 비용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시설운영비는 11.0%, 보육실습 지도교사 수당은 9.7%였다. 시설유형에 따라 살펴본 결과, 유치원의 경우 38.9%가 교재·교구 제작을 위한 시설물품 사용 비용이라고 응답하였고, 시설운영비로 사용한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의 보육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 보육실습 지도 경험이 있는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실습 현황에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통해 보육실습 지도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 기관에서 2008학년도에 보육실습생을 보낸 시설 유형은 주로 국공립, 민간, 법인보육시설이었고, 보육실습 대상 인원이 많을수록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실습 의존율이 더 높았다. 특히, 보육교사교육원이나 보육실습생 인원이 201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보육시설에 보육실습을 보내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육실습생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양질의 보육실습 기관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육실습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육실습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보육실습 기관을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로 한정하거나, 부적절한 보육실습 기관을 관리하고 불성실한 보육실습을 방지하기 위해 보육실습기관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 그리고 20인, 40인 이상의 시설로 보육실습 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실습 기관을 선정할 경우 1순위에서는 보육실습생 본인의 희망, 2순위에서는 보육실습 이후 보육실습생의 취업가능 여부, 3순위에서는 보육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우수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실습 기관을 선정할 경우 양질의 보육실습을 보육실습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보육실습 기관을 선정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처럼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실제 보육실습 기관 선정에서 보육실습생의 편의에 근거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실습 기관 선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기준 없이 보육실습생에게 보육실습 기관을 선정하

도록 하는 것은 보육실습의 내용이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좀 더 객관적인 선정기준의 근거와 신중성이 확립되어야 한다(조희진 외, 2003).

둘째, 2008학년도 1, 2학기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기관의 보육실습생 인원은 평균 130.5명이었고,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의 경우 최근 1~2년 동안 보육실습을 한 보육실습생 인원은 평균 2.97명이었으며, 최근 1~2년 동안 보육교사 1인당 보육실습생 인원은 평균 1.85명이었다. 보육교사 1인이 지도하는 보육실습생의 평균 인원은 많지 않았으나, 10명 이상의 보육실습생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시설에서 근무경력이 많은 교사를 우선적으로 보육실습 지도교사로 배정하거나 시설에서의 직급에 따라 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보육실습 지도교사 선정의 경우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을 경력교사와 주임교사 등으로 제한하여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육실습 지도 교사의 자격을 자격급수 제한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육실습 지도교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육실습 지도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에 한해 보육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1인의 보육실습 지도교사가 다수의 보육실습생을 지도하게 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실습 지도교사가 1회에 지도할 수 있는 보육실습생의 수를 1~2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에도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셋째,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실습 기관에 보육실습 지도비를 납부한다는 응답은 85.8%였고, 보육실습 기관마다 지도비 금액을 다르게 납부하는 경우보다 모두 동일한 금액의 보육실습 지도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모두 동일한 금액의 보육실습 지도비를 납부한 경우 2008학년도에 납부한 보육실습생 1인당 보육실습 지도비 금액은 약 4만 1천원이다. 이는 선행연구(김지영, 2000; 박지완, 2001)에서 평균 4만원의 보육실습 지도비를 납부한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에서는 보육실습생 개인이 보육실습 기관에 직접 보육실습비를 전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보육실습 기관에서도 보육실습생 개인이 보육실습 기관에 직접 전달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보육실습 지도비 전달방법의 경우 학과나 보육실습생 대표 등에 의해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보다 직접 전달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보육실습 지도비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통장 입금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원장의 64.4%가 보육실습 지도비를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나, 보육실습 지도교사에게 보육실습 지도수당을 제공한다는 응답은 9.7% 밖에 되지 않았다. 보육실습 지도수당을 받는다고 응답한 교사는 7.1% 밖에

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보육실습 지도교사가 지도수당을 받고 있지 않았다. 이처럼 보육실습 지도비를 받는 보육실습 기관의 비율에 비해 실제 보육실습 지도교사에게 지도수당이 제공되는 비율 간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보육실습 지도비의 사용내역을 통해 알 수 있다. 보육실습 지도비 사용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역은 보육실습생 식비였고, 다음으로 교재·교구 제작을 위한 시설물품 사용 비용이어서 실제 보육실습 지도교사에게 지도수당이 제공되는 사례는 적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실습 지도비와 보육실습 지도수당에 대해서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육실습 기관의 보육실습 지도비 수납 여부, 보육실습 지도비 전달방법, 보육실습 지도비 및 지도수당 금액, 보육실습 지도비의 사용내역 등이 시설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이나 보육사업안내에 보육실습 지도비 금액 및 사용 내역과 관련된 항목을 신설하여 표준보육실습 지도비를 책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보육실습 지도비 금액 및 객관적인 사용항목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보육실습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보육실습 지도비를 수령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보육실습 지도비 금액과 객관적인 사용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육실습생 및 보육실습 기관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이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실습의 현황에 대한 최초의 전국적인 실태조사라는 점이다. 기존의 보육실습 실태 관련 연구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었다는 점, 조사대상이 일부 보육실습생이나 보육실습 기관이라는 점 등의 제한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여 전국의 보육교사 양성기관, 보육실습 기관의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보육실습 관련 실태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음으로 전국적인 보육실습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표준화된 보육실습 지도지침이 개발될 경우, 보육교사 양성교육 기관과 보육시설 모두에 체계적인 보육실습 지도 및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실천적 지식 습득을 위한 보육실습의 목적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육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프랑스, 스웨덴, 일본, 싱가포르 등 외국의 보육교사 양성체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육실습 규정과 더불어(예, 이화도, 원수현, 2007; 한유미, 오연주, 권정운, 강기숙, 백석인, 2005)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보육실습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의 전국적인 보육실습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배부된 설문지 수에 비해 회수된 비율이

낮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정확한 보육실습 실태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참고문헌

김지영(2000). 보육교사의 보육실습에 대한 실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지완(2001). 유아교육 및 보육실습 실태와 실습생의 인식조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보건복지가족부(2009). **영유아보육법령집**.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1996). **보육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03). **보육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보육자격관리사무국(2009). **보육교사 국가자격 불인정 사례(내부자료)**. 서울: 보육자격관리사무국.

여성가족부(2007). **보육실습 세부기준 및 적용안내(보육정책팀-3292)**.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부(2005).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기준 연구**. 서울: 여성부.

이소희(2005). **보육실습**. 서울: 대왕사.

이화도, 원수현(2007). 프랑스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교사 양성체계 연구. **아동교육연구**, 27(5), 33-62.

임효진(2007). 교육·보육실습의 실태와 실습생의 실습에 대한 인식.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희진, 김정신, 노은호(2003). 보육실습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보육학회지**, 3(2), 243-276.

한유미, 오연주, 권정윤, 강기숙, 백석인(2005).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서울: 학지사.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2009). Professional Qualifications/Requirements for Child Care Centre Personnel.

<http://www.i-kosodate.net/policy/notices/index.html>(일본 지정보육사 양성기관의 운영 기준 및 교과목)

접 수 일 : 2010년 2월 26일

심사시작일 : 2010년 3월 8일

게재확정일 : 2010년 5월 12일